

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년 3월 5일
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2월 20일

나. 발 의 자: 박학용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2월 23일

라. 상정일자: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4. 3. 5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박학용 의원)

□ 제안이유

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·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3조)

나.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나. 협조부서: 문화체육과

다. 입법예고(2024. 2. 23. ~ 2024. 3. 4.) 결과: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가. 제정 취지

- 이스포츠¹⁾ 문화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강서구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1조는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강서구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함
- 안 제2조 ~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

1)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이스포츠"란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(媒介)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.

"게임물"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,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.

- **안 제4조**는 지역 내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. 또한,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제4조(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) ① 구청장은 지역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·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
2.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
3.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
4.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
5.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
6.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

- **안 제5조**는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, 이스포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·운영 근거를 제시함

제5조(이스포츠시설 설치·운영)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,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
2.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
3. 구민 및 각 계층별,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
4. 이스포츠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
5.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
5.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
6.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**안 제6조**는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강서구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 발전을 통해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,
-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 또한, 이스포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
- 강서구 이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, 조례 내용의 적정성과 상위 법령상 위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합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법령 1부. 끝.

□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